

보도시점 2026. 10. 30.(금) 석간
2026. 10. 30.(금) 06:00 배포 2026. 10. 29.(목)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 학대의심사례의 23.9%는 본인 신고

-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피해자 본인 신고 806건, 이 중 지적장애인 493건으로 가장 많아 -
- 학대판정사례 1,505건에 대해 상담 및 지원 15,274회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금),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대응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 중앙기관 1개소, 지역기관 16개 시·도에 19개소(경기, 충북, 전남·광주 각 2개소)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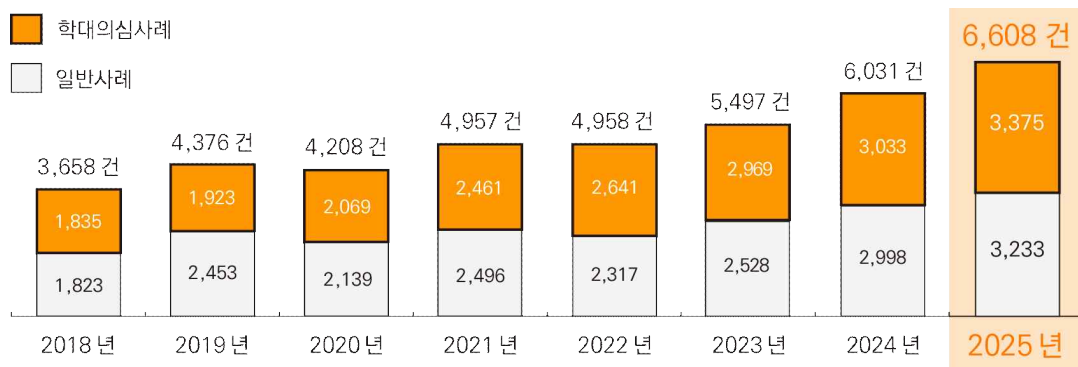
2025 장애인학대 주요 내용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6,608건이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895건(26.5%),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2,480건(73.5%)
- 학대판정사례 1,505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15,274회 실시
- 피해장애인의 76.2%는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 지적장애 70.1%, 자폐성장애 6.1%)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1.4%,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행위자 거주지 6.4%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4%,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 순
- 학대사례 중 재학대는 238건(15.8%),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가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 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 개인 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 895건(26.5%),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2,480건(73.5%)

-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530건 → ('24) 612건 → ('25) 806건

** 지적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266건 → ('24) 322건 → ('25) 493건

-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73.5%를 차지하고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한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1878호, 2026.8.11. 일부개정, 2027.2.12. 시행)

- (학대조사) 학대의심사례 3,375건 중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 학대조사횟수 : ('24) 6,855회(2,984건) → ('25) 7,520회(3,313건)

-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 대비 56건(3.9%) 증가하였다.

* 학대판정건수 : ('23) 1,418건 → ('24) 1,449건 → ('25) 1,505건

- (학대피해 장애인 현황) 전체 학대피해자 중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였다.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여성 601건, 남성 454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남성 76건, 여성 16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여성 비율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77.8%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다.

* 발달장애인 : ('24) 1,056건 → ('25) 1,171건

-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비율이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 피해장애인 연령대 : 10대 이하 356건(23.7%), 20대 370건(24.6%), 30대 256건(17.0%)

** 20대 : ('24) 328건 → ('25) 370건

-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 복지시설 12.8%(장애인거주시설 7.4%),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남성 283건, 여성 434건)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많았고, 장애인복지시설(남성 131건, 여성 62건)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많았다.

- (학대피해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5년 학대사례 1,505건에 대해 15,27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7.5%)하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 ('24) 16,514회(1,449건) → ('25) 15,274회(1,50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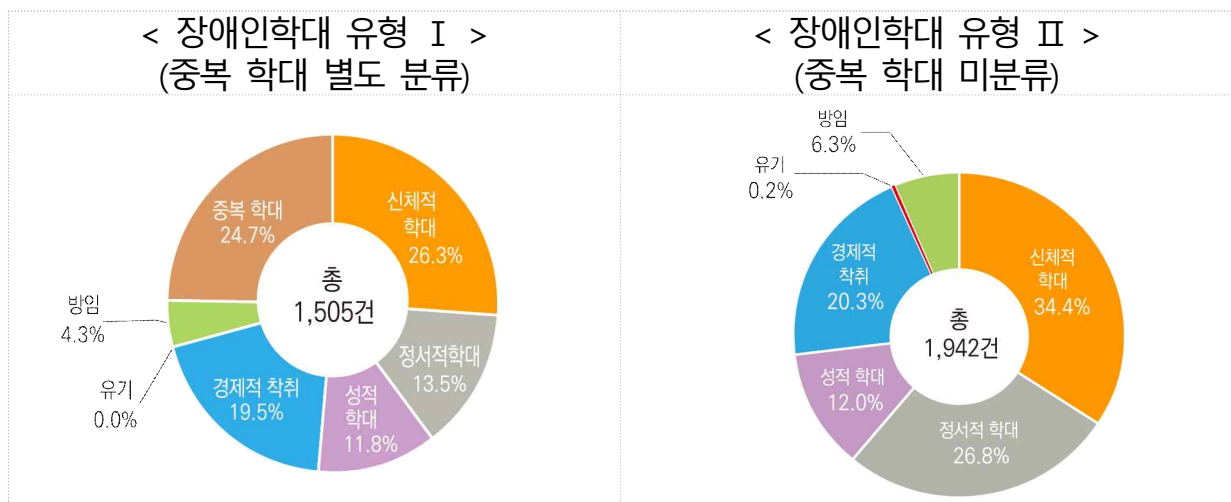
- 한편, 2025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3,375건과 이전 연도부터 계속 지원 중인 1,196건을 포함한 총 4,57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3,708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연중 지원한 사례 수는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으나,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 ('24) 33,458회(4,078건) → ('25) 33,708회(4,571건)

- 신고 건수와 학대의심사례 등 조사·지원 대상 사례의 증가에 비해 상담·지원 횟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증가하는 조사·지원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학대피해유형 및 재학대) 피해장애인이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중복학대 미분류),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학대사례 1,505건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한 중복 학대 사례는 372건(24.7%)이었다.



*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경우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중복 산정하여 집계한 결과 1,942건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사례건수 1,505건보다 많음

-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는 81건으로 전체 학대사례(1,505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피해자의 75.3%(61건)는 지적 장애인이었다.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다.

* 노동력 착취 : ('24) 74건 → ('25) 81건

-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15.8%)이었으며, 전년도 189건(13.0%)보다 49건 증가하고 비율도 2.8%p 상승하였다.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210건)는 발달장애인이었다.

* 재학대 건수 : ('20) 49건 → ('21) 81건 → ('22) 92건 → ('23) 128건 → ('24) 189건 → ('25) 238건

- 학대 발생빈도와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학대일수록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장기·반복 학대사례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1~2회 이하인 사례는 90.7%가 3개월 미만이지만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는 48.5%가 3년 이상 지속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와 피해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4.15.)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도 청취(8.27.)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예방중심 점검체계) 年 2회 합동점검 + 중점관리시설 특별관리체계 구축
- (학대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대응 역량 강화
- (인권 모니터링 내실화 및 협력 대응 강화) 인권 지킴이단 독립성 강화 및 협력 대응체계 구축
- (주거모델의 구조 전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전문화 등 기능전환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하여 학대피해 장애인 중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8.26.)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10.8.)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올해 2월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를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수어 통역과 영문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 아울러, 6월 22일 첫 번째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예방주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함께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에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였다.
-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5년 장애인 학대 주요 현황
 2.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통계(인포그래픽)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4.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통계 개요

<별첨>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	책임자	팀 장	차용민 (044-202-318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안영도 (044-202-3181) 김지영 (044-202-3184)
담당 부서 <수행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팀	책임자	관 장	박정식 (02-6951-1790)
		담당자	팀 장	최지연 (02-6951-1793)

1. 신고접수현황

1) 전체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건수	3,375	3,233	6,608
비율	51.1	48.9	100.0

2)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구분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	계
건수	5,152	280	68	162	946	6,608
비율	78.0	4.2	1.0	2.5	14.3	100.0

2.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 고 자 유 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08	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5	13.2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7	0.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81	2.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3	0.4
	의료기사	2	0.1
	응급구조사	-	-
	119구급대의 대원	1	0.0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5	0.4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8	0.2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3	0.1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5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93	2.8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63	1.9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5	0.1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8	0.8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구분			건수	비율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2	0.1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4	0.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4	0.1
	소계		895	26.5
비 신 고 의 무 자	본인		806	23.9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1	0.6
		부모	227	6.7
		자녀	41	1.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14	3.4
		그 외 친척	69	2.0
	유관 기관 종사자	경찰공무원	201	6.0
		일반공무원	69	2.0
		공공기관 종사자	35	1.0
		교육기관 종사자	29	0.9
		의료기관 종사자	8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396	11.7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1	0.6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1	0.3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78	2.3
		타인	306	9.1
	파악 안 됨		48	1.4
	소계		2,480	73.5
	계		3,375	100.0

3. 사례판정 및 지원현황

1) 학대조사 현황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A)	학대조사사례 (B)	학대조사실시율 (C=B/A*100)
3,375	3,313	98.2

2) 사례판정 현황

(단위: 건, %)

구분	장애인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기타 (조사중 조사거부, 이관 등)	계
건수	1,505	1,420	309	141	3,375
비율	44.6	42.1	9.2	4.2	100.0

4. 학대사례 분석

1) 피해장애인

①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성별	남성	여성	계
건수	692	813	1,505
비율	46.0	54.0	100.0

②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연령		건수	비율
10대 이하	17세 이하	299	19.9
	18~19세	57	3.8
20대(20~29세)		370	24.6
30대(30~39세)		256	17.0
40대(40~49세)		225	15.0
50대(50~59세)		178	11.8
60대 이상	60~64세	60	4.0
	65세 이상	60	4.0
계		1,505	100.0

③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¹⁾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61	4.1
뇌병변장애	58	3.9
시각장애	37	2.5
청각장애	31	2.1
언어장애	8	0.5
안면장애	-	-
지적장애	1,055	70.1
자폐성장애	92	6.1
정신장애	53	3.5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호흡기장애	1	0.1
간장애	-	-
뇌전증장애	5	0.3
미등록	104	6.9
계	1,505	100.0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주장장애유형과 부장애유형을 모두 확인하며, 피해장애인의 주장장애유형을 기초로 분석함

2) 학대행위자

①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

성별	남성	여성	계
건수	1,064	441	1,505
비율	70.7	29.3	100.0

②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06	7.0
	부	177	11.8
	모	116	7.7
	조부모	8	0.5
	자녀	44	2.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88	5.8
	그 외 친척	40	2.7
	소계	579	38.5
타인	동거인	71	4.7
	이웃	26	1.7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22	21.4
	고용주	21	1.4
	모르는 사람	133	8.8
	소계	573	38.1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3	13.5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1	0.1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2	2.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	0.3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	0.1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초·중등학교 종사자	25	1.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	0.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7	0.5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6	0.4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5	0.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4	0.3
	소계	290	19.3

피해장애인과 관계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3	0.2
	의료기관 종사자	2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41	2.7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4	0.3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2	0.1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3	0.2
	경찰공무원	-	-
	일반공무원	-	-
	소계	55	3.7
본인		3	0.2
파악 안 됨		5	0.3
계		1,505	100.0

3) 장애인학대 양상

①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396	26.3
정서적 학대		203	13.5
성적 학대		177	11.8
경제적 착취	노동력 착취 포함	61	4.1
	노동력 착취 미포함	232	15.4
	소계	293	19.5
유기		-	-
방임		64	4.3
중복 학대		372	24.7
계		1,505	100.0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668	34.4
정서적 학대		521	26.8
성적 학대		233	12.0
경제적 착취	노동력 착취 포함	81	4.2
	노동력 착취 미포함	313	16.1
	소계	394	20.3
유기		3	0.2
방임		123	6.3
계		1,942	100.0

②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717	47.6
학대행위자 거주지		96	6.4
기타 거주지		8	0.5
직장(일하는 곳)		62	4.1
교육기관		60	4.0
일반의료기관		11	0.7
정신의료기관		11	0.7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12	7.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7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9	3.3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피해장애인쉼터	4	0.3
	피해장애아동쉼터	1	0.1
	소계	193	12.8
그 외 보호시설(쉼터)		7	0.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64	4.3
정신요양시설		4	0.3
정신재활시설		3	0.2
아동관련시설		4	0.3
노인관련시설		7	0.5
기타 복지관련시설		7	0.5
종교시설		4	0.3
미신고시설		9	0.6
온라인		59	3.9
상업시설		86	5.7
기타		89	5.9
파악 안 됨		4	0.3
계		1,505	100.0

4) 특성별 학대사례 분석

① 재학대 사례

(단위: 건, %)

학대사례건수 (A)	학대사례 중 재학대		재학대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건수 (B)	비율 (C=B/A*100)	건수 (D)	비율 (E=D/B*100)
1,505	238	15.8	210	88.2

② 장애아동 학대사례

(단위: 건, %)

학대사례건수 (A)	장애아동 학대사례건수 (B)	학대사례 중 장애아동 학대 비율 (C=B/A*100)
1,505	299	19.9

2025년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신고접수 현황

총 6,608 건

학대의심사례 3,375 건
51.1%

일반사례 3,233 건
48.9%

학대판정 결과

장애인학대사례 1,505 건
44.6%

잠재위험사례 309 건
9.1%

비학대사례 1,420 건
42.1%

기타 141 건
4.2%

장애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34.4%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

성적 학대

12.0%

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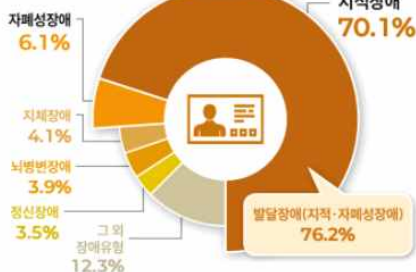
6.3%

유기 0.2%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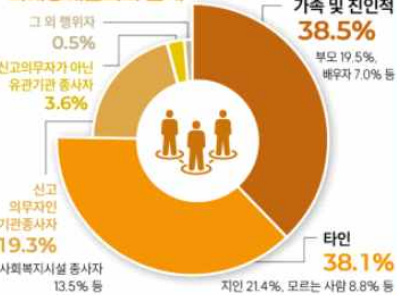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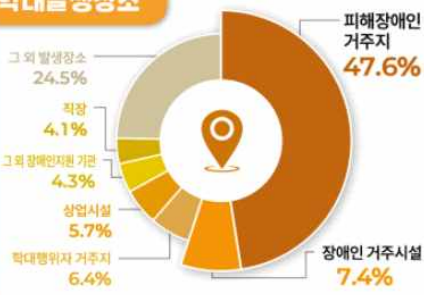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피해장애인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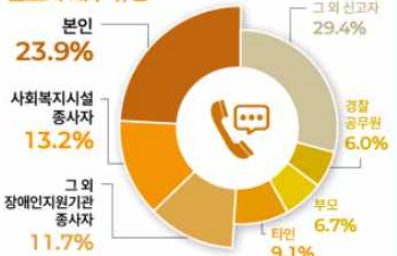
학대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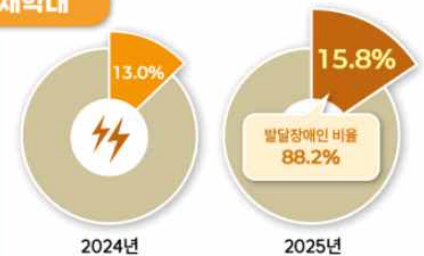
신고자 유형



신고자 세부 유형



재학대



□ **주요기능**

- (중앙기관) 지역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실태조사, 피해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 (지역기관)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 사후 관리,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 1644-8295(전국 공통, 전화, 문자·카카오톡 신고)

기관명	전화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양평동5가)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3453-9527	(06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거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4296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 4층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2213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01호(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619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34541)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2-260-8295	(44669)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연세H빌딩 2층(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4-905-8295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21호(보람동)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208호(오목천동)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11485)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 43번길 28,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6호(삼송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6	(2439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287-8295	(2879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빌딩 솔레이관 3층 303-1호(분평동)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847-8295	(27352) 충청북도 충주시 갯고개로 166, 3층(연수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1-551-8295	(3119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법조프라자 301호(청당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3-227-8295	(5496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1-10, 경희궁빌딩 5층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1-285-8298	(586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산정로 148, 8층(산정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4-282-8295	(376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632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제주마루 1층 101호

□ 발간목적

- '18년부터 매년 국가통계로 발간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 활성화에 기여
- 또한, 법률 개정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학대 예방에 기여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3호에 따른 통계 생산 및 제공

□ 자료수집 및 분석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접수 사례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분석하였으며, 개인식별정보는 제외
- 해당 보고서의 통계는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비율의 합계가 99.9%, 100.1% 등이 될 수 있음
- 이는 소수점 반올림에 따른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 오차 크기보다 작으므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요 분석 항목

분류	분석 항목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신고접수 방법, 신고접수 경로, 신고자 현황
학대사례판정 및 지원 현황	학대조사, 사례판정, 상담 및 지원, 사례종결 현황
학대사례 분석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인학대 양상, 장애인학대 유형, 응급조치, 사례종결, 사후 모니터링 현황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 노동력 착취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재학대 사례 현황
일반사례 현황	일반사례 유형, 차별사례 현황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연도별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학대사례판정,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유형, 재학대 현황